

카운슬링센터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센터는 “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한국카운슬링센터”(이하 “센터”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센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상담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임상훈련을 통한 전문상담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대학과 한국교회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.

1. 상담 및 임상훈련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
2. 상담 및 임상훈련에 관한 출판 및 자료수집과 홍보활동
3. 상담 및 임상훈련을 위한 교육 및 훈련
4. 자격증의 규정과 심사 및 부여와 지도감독
5. 기타 상담 및 임상훈련과 관련된 사업

제4조 (운영) 본 센터에서 실행되는 임상실습과 상담은 ‘카운슬링센터 운영내규’에 준한다. 운영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·개정한다.

제2장 직원

제5조 (직원) 본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부소장 1인
3. 전문상담사 약간명
4. 간사 약간명

제6조 (자격 및 임명) ① 소장은 전임교수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부소장은 겸임교수(박사)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전문상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임기) 본 센터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직무)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전문상담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센터프로그램개발과 사업개발을 진행하며,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업무를 실행한다. 보수, 근무조건 등은 별도의 지침 및 계약에 의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제10조 (임명) 운영위원은 소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본 대학의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된다.

제11조 (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자문위원회

제12조 (자문위원회) ① 센터의 목적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 (임명)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장 재 정

제14조 (재원)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자체수입금
2. 본 대학교의 지원비
3.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및 연구비
4. 기업체의 기부금
5. 기타.

제15조 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년에 준한다.

제16조 (승인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.

제 6장 보 칙

제1조 (기타 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